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1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액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 참여자 경품 제공 가액 범위 마련(안 제16조제2호)

나. 자원봉사자증 발급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10. 7. ~ 10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1.2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범위 안에서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”을 “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및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 자원봉사자증

<앞면>

<b>자원봉사자증</b>	( 사진 )
성 명 :	
생년월일 :	
유효기간 : . . . . ~ . . . .	
년 월 일	
<b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b>	

<뒷면>

※이 증은 본인만 소지할 수 있으며,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센터 ☎ 02-3153-83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, 1층

※ 규 격 : 가로 8.4cm × 세로 5.4cm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구                      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                     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                     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                     개최 ·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                      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                     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   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                     를 위하여 행사, 사업 참여자                      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 기                      념품 ·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범위에서 2만원                      상당의 기념품 · 상품권 등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<u>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</u></p> <p><u>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                      록된 전년도 연간 자원봉사활동                     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                      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                      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                    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</u></p>

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  
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 
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  
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 
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6조(자원봉사활동의 장려) 2.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행사,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16조의2(자원봉사자증 발급 등) ① 구청장은 전년도에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표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 - ②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·사용료·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### 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조현욱 (☎ 3153-8343)